

2024년 하반기 「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」 운영

□ 운영 개요

- 신고기간 : 2024. 12. 1. ~ 12. 31.
- 신고방법 : 공제회 방문, 우편, 팩스 및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PC, 모바일)로 자진신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액 반환
 - (우편)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, 14층 고객센터 (우편번호 : 04522)
 - (팩스) 0505-182-8332
 - (인터넷)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: 1122.cw.or.kr
 - (모바일) 구글 플레이스토어, 애플 앱스토어에서 '건설근로자공제회' 검색
- 자진신고 혜택 : 배액반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가능
 - ※ 부정수급 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(부정수급액의 10/100, 최대 50만원)

□ 신고대상 부정행위

- (허위근로) 건설 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,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지급받은 행위
 - ※ (예시) 친인척을 허위근로 신고한 후 퇴직공제금 수령 등
- (허위퇴직증빙) 건설업 퇴직 증명서류 위조 및 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
 - ※ (예시) 재직증명서 허위 발급 등
- (타인 퇴직공제금 취득) 타인의 퇴직공제금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
 - ※ (예시) 소속근로자 신분증, 통장사본 도용 등
- (기타)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자가 퇴직공제금을 적립 및 지급받은 행위
 - ※ (예시) 정규직, 1년 이상 계약직(상용직) 등

◆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(02-519-209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